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July 2, 2024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뉴스를 정리한 공정거래 소식지를 준비하여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 Vol. 3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 정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5. 16.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공정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 공정위,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 및 해외직구정보 통합하여 제공• (주요내용) 공정위는 5. 16.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내용)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를 재정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이슈	주요 내용
<p><u>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u> 5.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시 필요한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p><u>「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u> 5.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 • (주요내용)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하고 배포함
<p><u>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u> 6.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대한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p><u>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u> 6.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p><u>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u> 6.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 (주요내용) 문체부는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확정하여 고시함
<p><u>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u> 6.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2024. 7. 2.까지). 이는 2024. 2. 6.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임

이슈	주요 내용
II. 주요 소식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증가 및 과징금 액수 감소 경향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증가 및 과징금 액수 감소 경향 • (주요내용) 공정위가 2023년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수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반면,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전년대비 52.4%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표준약관 제정 준비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표준약관 제정 목표 시장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업체 표준약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위, 의료기기 유통시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함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검토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검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제조업과 용역업 분야의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및 건축설계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마련에 관한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한병도 의원안) 국회제출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법률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슈	주요 내용
<p>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김정호 의원안) 국회제출 6.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정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p>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6.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의함

I. 보도자료

1.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5. 16.)

- 정부는 5. 16.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음
- **(소비자 안전 확보)**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 안전 인증 관련 검토, 유해성분 포함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가품 차단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범정부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 협의 등
-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함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지원 및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창출 촉진, 역직구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등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시스템 개선

2. 공정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5. 17.)

- 공정위는 5. 16.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함
-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되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함
-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하여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함
-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

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1.)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범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를 재정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21. 국무회의를 통과(공포 즉시 시행 예정)
 -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음.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어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시정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 통지 절차 재정비)** 하도급법에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됨

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5. 23.)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임(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를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었음
- 공정위는 2023. 12.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예정)하였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함.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함.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의 계약서 명시 없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음
 -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 확보 및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를 보장하려는 목적임
 -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용 시,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됨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됨

5.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 (5. 27.)

-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하고 배포함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신고 창구, 검증 절차 등),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함
-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해 ①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②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함
 -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게임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①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②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6. 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편 (6. 4.)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대한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함
-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 등의 참가 시에 제출하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 4.)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제정됨(개정 시행령과 고시는 2024. 6. 21.부터 시행)
-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범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음
 -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 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함

-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 요건 등 -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함(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8.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확정 고시 (6. 13.)

- 문체부는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함.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분야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이 마련됨
 - (개정) ①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 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 웹툰 연재계약서, ④ 만화 저작물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 공동 저작 계약서, ⑥ 기획만화 계약서
 - (제정)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익 배분 규정의 명료화,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명문화, 휴재 및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 추가, 비밀 유지 조건 완화,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부과, 예술인 고용포함 조항 추가 등
- 2개 제정안은 최근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 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음

9.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 (6. 13.)

-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함(2024. 7. 2.까지)
- 2024. 2. 6.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고(2024. 8. 7. 시행예정), 금번 행정예고는 위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임
 -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②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③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④ 심사보고서 작성 → ⑤ 심의의 절차로 구성됨. 이 중 ①~④ 관련 내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⑤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됨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잠정판단 통보]** -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은 관련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게 통보
 - **[시정방안 제출]** -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시정방안 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빠르게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가능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음. 또한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제출하였던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음.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됨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관은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 상의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음
- **[심의]** -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신속해짐(fast-track).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되어야 함(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 개최되고, 심의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 작성)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증가 및 과징금 액수 감소 경향 (5. 22.)

-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2023년에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 대비 15.2% 증가함.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915억 7,600만원이며,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부과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394억 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 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 8,200만원) 순
-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큰 소수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면서,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함

2.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 제정 준비 (5. 23.)

- 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 제정을 목표로 시장 실태조사에 나서, 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은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건만 해도 74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수치에 해당함
-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업자 단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위약금,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3. 공정위, 의료기기 유통시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 (5. 29.)

- 공정위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함.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실태 파악임
 -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거나, 간접납품회사들이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임

4. 공정위, 제조·용역업에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예정 (6. 9.)

- 공정위가 올해 12개 업종의 하도급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검토 중이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마련에 관한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 공정위는 제조업과 용역업 분야의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건축설계업,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 기계업, 동물의약품제조업, 방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의약품 등 제조업, 전기업, 전자업, 건설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검토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과 거래 현실 변화 등을 조사해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중복사항을 통합하는 등 관련 계약서를 정비할 계획
- 이번 연구는 5개월 동안 진행되며,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쯤 계약서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1.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민형배 의원안) 국회제출 (6. 10.)

- 국회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개정)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한병도 의원안) 국회제출 (6. 11.)

-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 가맹금의 범위에서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제6호 개정, 제6조의6 신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 제1항 신설)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삭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3항,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개정).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법률안(오기형 의원안) 국회제출 (6. 12.)

- 국회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법률안을 발의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정호 의원안) 국회제출 (6. 13.)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정호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내용(안 제2조의2 신설)의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거나,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 등에서 외국기업에 하도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5.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이정문 의원안) 국회제출 (6. 13.)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은 사업자 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 제2항 개정)의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